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3. 4. 29. 제정 판 (시행 2013. 3. 1.) → 2017. 9. 6. 개정 판 (시행 2017. 9. 1.)

바뀜 17 · 신설 2 · 삭제 0 · 번호 변경 3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98/compare?from=492&to=879>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43:2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u>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유학생</u> 을 말한다(이하 “ <u>유학생</u>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9-06> 1. ‘ <u>학부 외국인 유학생</u> ’(이하 ‘ <u>학부 유학생</u> ’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7-09-06> 2. ‘ <u>대학원 외국인 유학생</u> ’(이하 ‘ <u>대학원 유학생</u> ’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3. ‘ <u>외국인 교환학생</u> ’(이하 ‘ <u>교환학생</u>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4. ‘ <u>외국인 어학연수생</u> ’(이하 ‘ <u>어학연수생</u> ’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9-06>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부 유학생, <u>대학원 유학생,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u> 에에게 적용한다.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유학생 주관부서는 <u>국제문화교육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유학생에 대한 정책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관한다.</u> 1. 유학생의 <u>학교생활</u> 2. 유학생의 <u>생활안전</u> 3. 유학생의 <u>학생상담</u> 4. 유학생 관련 행사 5. <u>출입국 업무 지원</u>	제4조(주관부서) ① <u>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u> (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입학처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 <u>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u>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제5조(관리부서)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교무처 입학관리본부: 유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도</u> 2. <u>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u> 3. <u>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u>	제5조(관리부서)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입학처: 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도</u> <개정 2017-09-06> 2. <u>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u>

현행	개정안
4. 사무처 재무실: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실: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제6조(등록금) 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당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당당자는 외국인 유학생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7-09-06>
제7조(장학금)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장학 규정과 그 외에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7조(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전면개정 2017-09-06> 출입국 업무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유학생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출입국 자료의 관리 책임을 지며, 제6조의 정당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소속 직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소속 직원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소속 직원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직원
제8조(유학생 지도교수) 유학생 소속 학부(과)에 유학생의 학사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지도교수를 둔다.	제8조(현황통보) 제6조의 정당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7-09-06>
<신 설>	제9조(변동신고) 제7조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전면개정 2017-09-06>
<신 설>	제10조(학생 상담) ① 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현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학생 멘토)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 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1조(유학생 멘토)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 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7-09-06>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사관리) ①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u>국제문화교육원은</u>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사제도 및 학교생활 등을 안내한다. ③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u>국제문화교육원</u>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u>국제문화교육원은</u>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사관리) ①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u>제4조의 주관부서는</u>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u>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학사제도, 학교생활, 보험, 안전관리</u> 등을 안내한다.〈개정 2017-09-06〉 ③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u>제4조의 주관부서</u> 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u>제4조의 주관부서는</u>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제11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1. 학사일정 등을 숙지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2.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3.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제13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1. 학사일정 등을 숙지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2.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3.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제12조(출결관리)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제14조(출결관리) 외국인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7-09-06〉
제13조(수업연한)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연한) <u>외국인 유학생의</u>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제14조(생활교육관 이용) 신입학 유학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u>국제문화교육원</u> 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 신입학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u>제4조의 주관부서</u> 에 통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7-09-06〉
제15조(졸업가능 어학기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출입국 관리) 학과에서는 유학생이 5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u>국제문화교육원</u> 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u>국제문화교육원은</u>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국 관리) 학과에서는 유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u>제4조의 주관부서</u> 로 통보하여야 하며, <u>제4조의 주관부서는</u>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활동) 국제문화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제19조(문화활동)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개정 2017-09-06>
제17조(비상연락 체계구축) 국제문화교육원은 유학생이 수학하는 동안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0조(비상연락 체계구축) 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수학하는 동안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삼육대학교 안전관리세부지침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7-09-06>
제19조(보험가입) ①유학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한다. ②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①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7-09-06> ②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09-06> ③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 유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3.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22조(준수사항) 유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3.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09-06>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하 '학부 유학생'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하 '대학원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외국인 교환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 및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외국인 어학연수생'(이하 '어학연수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제3조 중 "유학생"을 "유학생, 대학원 유학생,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학부 유학생: 입학처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제5조 중 "교무처 입학관리본부: 유학생의"를 "입학처: 학생의"로 하고, "관리 및 지도"를 "관리 및 지도<개정 2017-09-06>"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담당자 지정)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 출입국 업무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유학생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출입국 자료의 관리 책임을 지며, 제6조의 정담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소속 직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소속 직원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소속 직원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직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현황통보) 제6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변동신고) 제7조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학생 상담) ①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현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유학생 멘토)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학사관리) ①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주관부서는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 사항, 학사제도, 학교생활, 보험, 안전관리 등을 안내한다.

③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주관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출결관리) 외국인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업연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 신입학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출입국 관리) 학과에서는 유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제4조의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4조의 주관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문화활동) 국제교육원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에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상연락 체계구축) 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수학하는 동안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삼육대학교 안전관리세부지침계획'을 따른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㉔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